

조사연구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조명·전기설비학술 및 기술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연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본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연구조사 과제의 선정
2. 전문위원회의 구성
3. 전문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한 검토
4. 기타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위원회 구성) 본 위원회는 조사이사 및 약간명의 회원으로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사이사중에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위원장(1인)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부위원장(1인)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5조(전문위원회)

1.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2.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학회장이 위촉한다.
3.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의안의 처리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조(결의) 회의안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전문위원회의 의결도 이에 준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학회이사 임기에 준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87년 4월8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